

## 산업통상자원부

수신 손해보험협회 (경유) 제목 민원(1BA-1909-048016) 처리결과 안내

- 1. 안녕하십니까?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.
- 2. 손해보험협회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번호 1BA-1909-048016)은 '특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[별표22] <표11>에서 기술된 민간투자사업에 준하는 수준의 수익 및 안정성이 보장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'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.
  - 3. 손해보험협회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.

□ '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
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204호)(이하 고시)」제3조제22호에 따른 '고정가격계약'
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(이하 법)」제12조의7에 따른
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「전기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
고정가격으로 합산하여 신·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
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(이하 영)」제18조의3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
(이하 공급의무자)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.

o 아울러, 고정가격계약 등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확보하는 과정을 '의무이행'이라고 하며, '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'은 영 제18조의11및 고시 제12조, 「전기사업법」 제43조를 근거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정산됩니다.

	□ 법 제17.	조에 따른	' 발전차액	지원 '을	을 적용	받는 신	·재생에너지	발전사업
자는	신재생에너지	전력거래기	<b>나</b> 격과 발전	기준가격	<b>후</b> 과의	차액을	「전기사업법」	제48조
에ㄸ	h른 전력산업기	반기금에서	시지원 받습	늘니다.				

	□ 이에,	① 고정기	-격 계약체결	결 또는 (	② 발전차	·액 지원이	적용되는	"신·기	대생
에너지	발전 " 사	업은 정부	또는 공공기	기관에 으	하여 직	· 간접적으로	르 수익 5	보전(補塡	į)0
이루어	지는 사업	이라고 볼	수 있습니다	<b>구</b> .					

□ 한편,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설비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됩니다. o ① 고정가격 계약체결(다만, 최초 계약시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계약단가가 숫자(數字)로서 확정적으로 명시되는 경우에 한하며, 계약당사자의 사유로 계약 종결시 제외) 또는 ② 발전차액 지원이 적용되는 "신·재생에너지 발전"사업(다만, 고정요금을 적용받는 사업에 한함)은 계약기간(또는 지원기간) 동안 수익단가(MWh당)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상 민간투자사업에 준하는 수익구조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

□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① 또는 ② 조건을 충족하는 신·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, 「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22]」<표11> '특수금융의 분류'중 사회기반시설금융(SOCF) 1.-나.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,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기헌 사무관(☎044-203-5362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

공업사무관 **이기취** 과장

전결 2019. 9. 4. **이용필** 

협조자 주무관 이승권

시행 신재생에너지정책과-1703 (2019.09.04)

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, 산업통상자원부) / http://www.moti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5362 팩스번호 044-203-4769 / LKH4720@motie.go.kr / 비공개(6)